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24.1.2.)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 (안 제13조)

-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 (안 제13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 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 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소장 임용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보건소장)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 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807